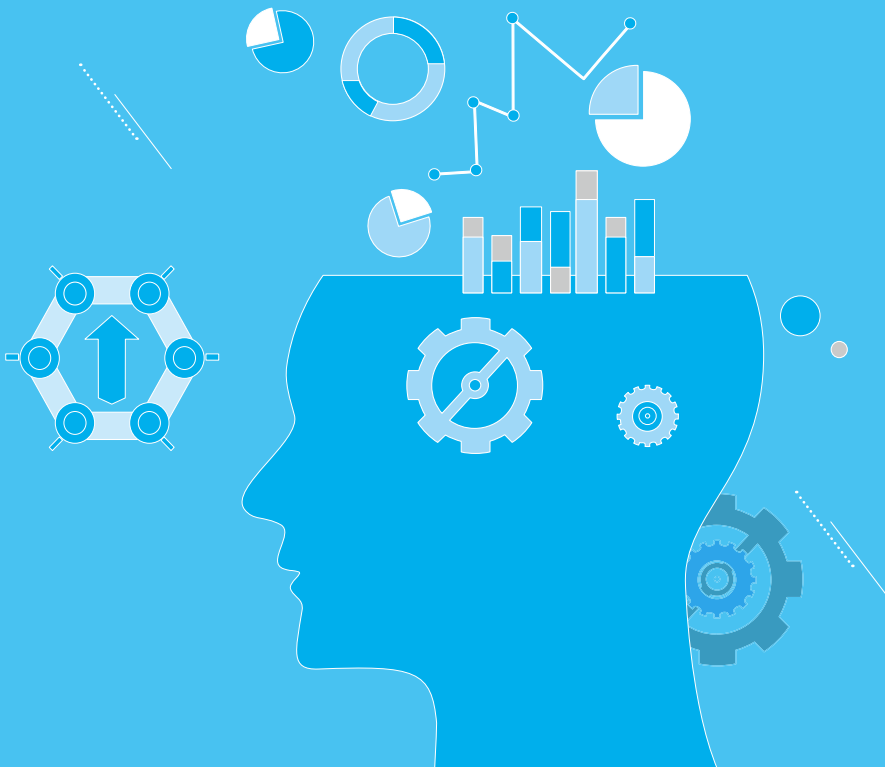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손현(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시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개발·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들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각종 공공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과학적 혁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ICT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공공 행정 영역에 접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번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개발한다고 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사회·환경도 다르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인프라의 구축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 및 재난 유형을 파악하고, 재난 대책에 있어 취약 요인을 분석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재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기법에 기초한다면 보다 적합하고 유용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CT 신기술의 행정현장 적용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적으로도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통한 공공 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통계법」상의 통계기반 정책 평가 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미리 그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과학적·정책적으로 접근·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 현행 법령상에 기반한 이러한 각각의 제도들은 구체적으로 각 근거 법령에서 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실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물리적, 법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형식적인 평가 및 활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책추진에 있어 선형적 방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과학적·수치적 해석이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근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 실패의 위험성을 낮추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공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데이터나 공공데이터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여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등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입법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이에 반하여 공공, 민간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정부 및 공공기관(공공 영역)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 공공영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범위,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빅데이터 등 분석 증거에 기초한 과학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제가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정부3.0위원회) 등에서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 상호 간의 관계, 해외 입법 동향을 통한 비교법적 분석, 제정안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 분석 등이 미진한 상태로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체계적인 관점에서 입법론적으로 지원하고,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 방안별로 구체적인 제·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